

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【윤준용 의원 발의】



2020. 8. 3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56호로 2020년 8월 21일 윤준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동보호구역의 지정·공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아동보호구역 관련 사업추진, 실태조사, 시설물 설치 등
(안 제5조 ~ 제8조)
- 다.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(안 제9조 및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0. 8. 21. ~ 8. 25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4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·공고에 관한 사항
 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정비·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
 -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을 상대로 한 유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동보호구역 지정·공고,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.

참 고 자 료

1

아동복지법

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
4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